

1. 개정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상향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

(1.공통기준. 라. 4)

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상향

(2.개별기준. 1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의료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1차 위반: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 2차 위반: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	---	--

별표 제2호가목19) 위반사항란 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법 제27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별표 제2호가목19)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제1항제5호 및 제10호”를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목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6개월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